

수원지방법원 2021. 8. 24 선고 2020가단24805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민혜

변론 종결 2021. 7. 6.

판결 선고 2021. 8. 2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,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제1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6. 1. 27. 체결된 매매예약 계약 및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제2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3. 5. 체결된 매매예약 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. 1. 28. 접수 제16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. 3. 5. 접수 제574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2018. 2. 18. 원고에게 2015. 11. 12. 5,000,000원, 2015. 12. 28. 5,000,000원을 차용하였고, 2018. 2. 18. 30,000,000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합계 40,000,000원과 이자 10,000,000원을 합한 50,000,000원을 2019. 2. 18.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.

나. C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20. 10. 22. 원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50,000,000원을 2020. 10. 31.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

다.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및 각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2. 31. 2014. 11. 27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여 C과 C의 어머니인 피고1) 명의의 각 1/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C의 지분에 관하여 2016. 1. 28. 2016. 1. 27.자 매매예약(이하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'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. 한편,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3. 4. 같은 일자 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가 다음날인 2020. 3. 5. 같은 일자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각 제2 부동산 매매예약'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 1,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매매예약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

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, 피고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원고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C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및 각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 및 각 제2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이 법원의 판단

1)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이거나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이어야 한다.

2) 갑 제2 내지 4호증,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2016. 1. 27.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,000,000원만이 인정될 뿐인 점, 반면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및 각 제2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화성시 D 전 1,567㎡ 중 1/4 지분이 있었는데, 2011. 11. 10. 당시 위 부동산 전체 지분의 매매가격이 450,000,000원이었던 바, 2016. 1. 27.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112,500,000원(= 450,000,000원 × 1/4) 이상일 것으로

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매매예약 계약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

3)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2020. 3. 5.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,000,000원이 인정되는 점, 또한,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 E에 대한 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기는 하나, 위 채무는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바, 그 범위 내에서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점(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),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제1 부동산 및 각 제2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화성시 D 전 1,567㎡ 중 1/4 지분이 있었는데, 2011년 당시 ㎡당 173,000원이었던 개별공시지가가 2020년 기준으로 285,100원까지 상승하였고, 2011년 위 부동산의 전체 지분 매매가격은 450,000,000원이었던바,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2020년 기준 매매가격은 대략 741,589,535원(= 450,000,000원 × 285,100/173,000, 원 미만 버림. 이하 같다)에 이르고, 여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2. 16. 설정된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을 제하면 481,589,595원(= 741,589,535원 - 260,000,000원)이 되며, 결국 C의 지분가액은 120,397,398원(= 481,589,595원 × 1/4)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27. 설정된 채무자 C, 채권자 F, 채권최고액 31,000,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적극재산 가액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2020. 3. 5. 후의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제2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매매예약 계약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

4)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환영

별지

1) 피고는 C을 입양하였는데, 현재 모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1699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.